◉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77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2. 실증특례 연장

<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

라.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 특구사업자

<table>
<tr><td>기존</td><td>
<table>
<tr><th>No</th><th>특구사업자명</th><th>대표자명</th><th>주소</th></tr>
<tr><td>1</td><td>경북대학교병원</td><td>김용림</td><td>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td></tr>
<tr><td>2</td><td>(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td><td>이영호</td><td>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td></tr>
<tr><td>3</td><td>㈜제윤</td><td>윤태원</td><td>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대구융합 R&D센터 1035호</td></tr>
<tr><td>4</td><td>클루피㈜</td><td>김기환</td><td>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2층 215호</td></tr>
<tr><td>5</td><td>헬스커넥트㈜</td><td>임동석</td><td>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606-2호A</td></tr>
<tr><td>6</td><td>㈜트라이벨랩</td><td>이상학</td><td>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606-2호B</td></tr>
</table>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td></tr>
<tr><td>변경사항</td><td>
<table>
<tr><th>구분</th><th>No</th><th>특구사업자명</th><th>대표자명</th><th>주소</th><th>변경사유</th></tr>
<tr><td rowspan="2">사업자 해지</td><td>2</td><td>(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td><td>이영호</td><td>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td><td>경북대학교병원으로 업무이관</td></tr>
<tr><td>4</td><td>클루피㈜</td><td>김기환</td><td>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2층 215호</td><td>경북대학교병원으로 업무이관</td></tr>
</table>
</td></tr>
<tr><td>비고</td><td>관보 제19563호(2019.8.9.) 97쪽
관보 제20054호(2021.7.29.) 138쪽</td></tr>
</table>

경상북도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식회사 메쉬코리아	유정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2	주식회사 피엘지(PLZ Co,Ltd.)	박순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3	주식회사 리턴박스	윤지근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17-2(감만동)
4	㈜모토벨로	이종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5	㈜누리기술	김금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6	쿠팡 주식회사	강한승, 박대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신천동)
7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김진태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호
8	주식회사 비엔씨테크 (BNCTECH Inc.)	조현일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9	주식회사 이삼사 코리아	박신정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8층 S3003호(태평로1가)
10	주식회사 에코브(Eccov Inc.)	최정남, 임성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66, 비105호(관양동)
11	주식회사 에임스	최성훈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변경사항

구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사업자 추가	12	㈜알톤스포츠	김신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25 씨동 8층(삼평동)	성공적인 실증사업 수행과 첨단물류 산업 활성화

비고

관보 제20054호(2021.7.29.) 122～123쪽
관보 제20215호(2022.3.25.) 140쪽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변경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기존	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①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373조 무인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②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③ 환매금지형펀드의 환금성 보장방법으로 플랫폼매매방식 한시적 인정 (자본시장법 제230조 제3항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부대 조건) 1. (물적설비) 블록체인 플랫폼의 장애대응, 보안체계 등 점검에 관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한 후 부산시 등에 보고 2. (인적요건) 유형별 전문인력(부동산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을 각각 1명 이상 유지(단, 전산전문인력은 8명 이상 유지 필요) 3.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매매·결제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므로 부서간 이행상충방지체계, 정보교류차단장치*를 마련 *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4. (업무규정) 서비스개시 전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마련 * 일반투자자 매매전 플랫폼사업자가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플랫폼 전반의 운영에 대한 업무규정 마련 * 시장감시를 위한 외부인으로 구성된 독립된 시장감시위원회 및 별도의 시스템 구축 5.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내에 거래플랫폼을 통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 6. (분쟁발생 처리결과 통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결과를 부산시 등에 통보 7. (투자자 자금관리) 투자자의 투자금은 세종텔레콤(주)의 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8.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서비스 중단시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여 처분수익을 기존 투자자에 배분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 중단에 따른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9. (피해보상 방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10. (투자광고 및 영업방식)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 금지 - 00페이 등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 금지 11. (매매방식 및 사업규모)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 사업규모 제한 - 실증기간내 총 수익증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한정 - 투자자 자격 제한 : 부산은행 계좌소유자로 한정 - 부동산 물건 제한 : 부산지역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

			-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 2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 투자자 1인당 1일 매매회전율 : 100% 이하
			④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2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①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 환자의 대리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법인(대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담당직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②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 대리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료기록 사본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 → (부대 조건) 1. 환자에게 진료기록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2. 사업자가 제3자(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에게 진료정보 제공시 반드시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것 3. 사업자가 제3자에게 환자 정보 제공시 제공사실 및 그에 따른 혜택 등을 통지할 것
			③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 -chain)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변경 사항	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①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373조 무인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②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③ 환매금지형펀드의 환금성 보장방법으로 플랫폼매매방식 한시적 인정 (자본시장법 제230조 제3항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부대 조건) 1. (물적설비) 블록체인 플랫폼의 장애대응, 보안체계 등 점검에 관한 모의테스트를 실시한 후 부산시 등에 보고 2. (인적요건) 유형별 전문인력(부동산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을 각각 1명 이상 유지(단, 전산전문인력은 8명 이상 유지 필요) 3.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매매·결제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므로 부서간 이행상충방지체계, 정보교류차단장치*를 마련 *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4. (업무규정) 서비스개시 전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마련 * 일반투자자 매매전 플랫폼사업자가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플랫폼 전반의 운영에 대한 업무규정 마련 * 시장감시를 위한 외부인으로 구성된 독립된 시장감시위원회 및 별도의 시스템 구축 5.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내에 거래플랫폼을 통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 6. (분쟁발생 처리결과 통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결과를 부산시 등에 통보 7. (투자자 자금관리) 투자자의 투자금은 세종텔레콤(주)의 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8.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서비스 중단시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여 처분수익을 기존 투자자에 배분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 중단에 따른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9. (피해보상 방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10. (투자광고 및 영업방식)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 금지 - 00페이 등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 금지 11. (매매방식 및 사업규모)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 사업규모 제한 - 실증기간내 총 수익증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한정 - 투자자 자격 제한 : 부산은행 계좌소유자로 한정 - 부동산 물건 제한 : 부산지역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 -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 2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 투자자 1인당 1일 매매회전율 : 100% 이하
		④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⑤ 거래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해 수익증권을 판매하지 않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참가할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8조 수익권등의 전자등록업무 참가 신청 등)** **(부대 조건)** **1.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판매하는 자인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권리자의 전자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계좌관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계좌관리기관(1개사)은 전자등록업무 수행 전 플랫폼 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며 토큰·수익증권의 발행·보유총량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관련 규정은 예탁원과 협의)** ***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하고 토큰은 세종텔레콤 플랫폼 내에서만 유통되게 할 것**
2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기존 내용 동일>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7.28.) 210쪽~211쪽 관보 제20040호(2021.7.9.) 102쪽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1. 실증특례 연장

기존

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 위치 및 면적

연번	위치	면적(m^2)
1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158 일원	1,287,000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812-2, 813-3번지	24,469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812-1번지	13,436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1114번지	28,000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1109-2번지	19,000
6	울산광역시 언양읍 반천리 1104-4번지	4,150
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42,730
8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35	14,094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38	10,783
1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교동 138)	5,404
1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61,600
1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이화일반산업단지 산 65-2번지 외	165,700
13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211,700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100	71,623
합계		1,959,689

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 위치 및 면적

연번	위치	면적(m^2)
1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158 일원	1,287,000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8-9번지	2,041
3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863-3 번지	16,500
4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579-21 소형선박부두	5,300
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42,730
6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35	14,094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38	10,783
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5,404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8-3/1208-4/1208-6/1208-7/1208-8/1208-10 번지	10,824
합계		1,394,676

변경 사항	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 위치 및 면적

구분	연번	위치	면적(m^2)
	1~10, 12~14	<기존 내용 동일>	1,898,089
삭제	1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61,600
추가	1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9번지	15,967
합계			1,914,056

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 위치 및 면적

구분	연번	위치	면적(m^2)
	1~9	<기존 내용 동일>	1,394,676
추가	10	태화강 항로(2.42km×0.05km)	121,000
추가	11	장생포 항로(6.50km×0.05km)	325,000
합계			1,840,676

비고	관보 제19643호(2019.12.6.) 66쪽, 관보 제19693호(2020.2.20.) 28쪽, 관보 제19803호(2020.7.28.) 220쪽~222쪽, 관보 제19886호(2020.11.27.) 144쪽~145쪽, 관보 제19954호(2021.3.9.) 78쪽, 관보 제20040호(2021.7.9.) 116쪽, 관보 제20136호(2021.11.30.) 282쪽, 285쪽, 관보 제20315호(2022.8.18.) 168쪽~169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 미래신산업과에 비치

삭제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번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앞바다 - 태화강 일대

추가	 (축적 1/10,00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9(추가) (축적 1/10,000) 태화강 항로(2.42㎞×0.05㎞)(추가) (축적 1/25,000) 장생포 항로(6.50×0.05㎞)(추가)
비고	관보 제19643호(2019.12.6.)70쪽, 관보 제19886호(2020.11.27.) 146쪽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table>
<tr><td>기존</td><td>
<table>
<tr><th>No</th><th>세부사업</th><th>특례부여 현황</th></tr>
<tr><td>1</td><td>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한 제품제작 및 실증</td><td>①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부여
<부대조건>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기준 등은 관련법령 준수
○ 실증제품의 현장 적용시 타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안전성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활용</td></tr>
</table>
</td></tr>
<tr><td>변경사항</td><td>
<table>
<tr><th>No</th><th>세부사업</th><th>특례부여 현황</th></tr>
<tr><td>1</td><td>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한 제품제작 및 실증</td><td>①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부여
<부대조건>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기준 등은 관련법령 준수
○ 실증제품의 현장 적용시 타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안전성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활용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사전승인 및 사용신고 없이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부여
<부대조건>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보관, 수집·운반)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함</td></tr>
</table>
</td></tr>
<tr><td>비고</td><td>관보 19643호(2019.12.6.) 67쪽,</td></tr>
</table>